

ISSN 2733-7529 (Print)
ISSN 2733-7537 (Online)

Poles & Globe

극지와 세계

2023 SEPTEMBER
Vol. 03

국가환경시료은행,
남극 시료 확보·저장으로
남극 환경 지킴이에 나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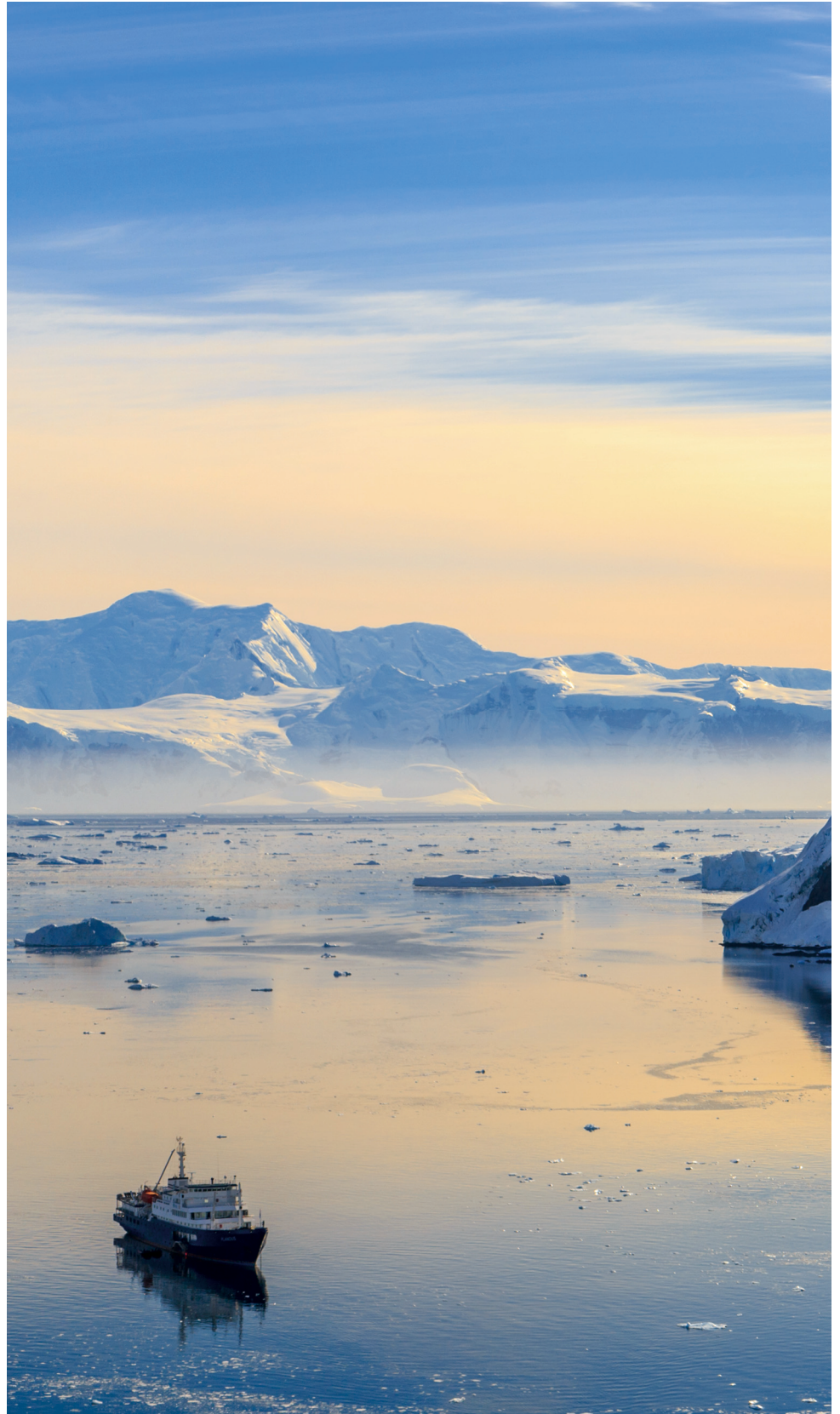
이장호
국립환경과학원

우주 행성 자원탐사의 시작
남극 빙하 시추

유병현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국가관할권 한계 바깥 지역
해양생물다양성(BBNJ) 협정 채택의
의미와 극지에 미치는 영향

이창열
한국해양과학기술원



SEPTEMBER

Vol. 03

03p 이장호 국립환경과학원

국가환경시료은행, 남극 시료 확보·저장으로 남극 환경 지킴이에 나선다

환경부 국립환경과학원에서 운영하는 국가환경시료은행은 2022~2023년 남극 하계연구활동 기간에 남극 세종과학 기지 인근(나레브스키 특별보호구역 포함)에서 국내로 운송해온 지의류, 이끼류, 샷갓조개 등 8종류 167점의 시료를 초저온 저장했다. 국가환경시료은행은 시료를 -150°C 이하로 변질 없이 보관할 수 있는 액체질소 냉동고 등의 시설을 구비하고 있다. 따라서 저장된 시료들은 남극 환경오염 모니터링에 활용될 예정이다. 장기간 보관이 가능한 시료들은 과거에 미처 조사하지 못했던 오염 실태를 실증적으로 파악하는 데 큰 도움을 준다. 국가환경시료은행은 2009년에 건립되어 2012년부터 국내 27곳에서 소나무, 잉어, 갯이갈매기 알 등 9종의 시료를 채취·보관하고, 국내 환경오염 실태를 조사·평가하는 데 활용되고 있다. 환경부는 우리나라 지정 남극특별보호구역 환경관리 담당 부처로서 2010년부터 보호구역과 그 주변의 생물 서식 실태 등을 조사해 오고 있다. 이에 더해 서식 생물이 오염 물질에 얼마나 많이 노출되어 있는지를 파악하고자 이번에 국가환경시료은행에서 시료를 채취·저장하게 되었다. 아울러 저장된 시료들로 오염물질을 분석하고 그 결과를 남극과학위원회와 공유하는 등 남극 환경오염 모니터링 국제협력에 적극적으로 동참하고자 한다.

06p 유병현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우주 행성 자원탐사의 시작 남극 빙하 시추

인류의 지구 밖으로의 탐사는 영원한 도전과 과학 발전을 토대로 이뤄지는 과정이다. 우주의 신비와 미지의 세계를 탐험하려는 인류의 노력은 과학 기술 발전과 함께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남극은 남위 60도 이상의 육지·빙봉 및 수역과 그 상공으로 이루어져 있고 독특한 지리적 조건과 자연환경으로 우주탐사기술 개발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 남극이 가진 극한의 자연환경은 우주 탐사를 위한 기술과 장비를 테스트하기에 적합한 요소이기도 하다. 또한 남극은 매우 추운 기후와 강한 바람, 거대한 빙하로 이루어져 있으며 이는 우주 운송, 탐사 및 보호 장치의 신뢰성과 내구성 검증 및 우주기술 개발에 있어 매우 유리하다.

09p 이창열 한국해양과학기술원

국가관할권 한계 바깥 지역 해양생물다양성(BBNJ) 협정 채택의 의미와 극지에 미치는 영향

2023년 6월, 유엔은 국가관할권 한계 바깥 지역 해양생물다양성 보전과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유엔해양법협약 하의 협정(Agreement under the United Nations Convention on the Law of the Sea on the conservation and sustainable use of marine biological diversity of areas beyond national jurisdiction)을 채택하였다. 동 협정은 국가의 배타적관할권이 미치지 않는 공해와 심해저에서의 해양생물다양성을 보전하고 지속가능하게 이용하려는 데 목적이 있다. 이 협정은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해양보호구역과 같은 보호 대상 구역을 찾아 인간의 활동을 규제하는 일정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국제적 절차 규정을 마련하고, 공해와 심해저에서 각국이 계획하는 활동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해양환경의 영향을 검토하여 그 영향을 저감할 수 있는 조치 등을 강구하는 환경영향평가 과정을 규정하고 있다. 동 협정이 적용되는 지리적 범위는 공해와 심해저로서, 북극 한가운데 존재하는 공해에도 해당된다. 또한 남극조약과 남극해양생물자원보존협약의 해석에 대한 견해차에 따라 남극대륙 주변 해역에도 적용된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국가관할권 한계 바깥 지역의 해양생물다양성 협정 이행과 관련하여 극지에 대한 제도 보완, 그리고 남극 관련 조약과의 관계에 관한 문제 검토가 요구된다.

이창열 한국해양과학기술원



국가관할권 한계 바깥 지역 해양생물다양성(BBNJ) 협정 채택의 의미와 극지에 미치는 영향

2023년 6월, 유엔은 국가관할권 한계 바깥 지역 해양생물다양성 보전과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유엔해양법협약하의 협정 (Agreement under the United Nations Convention on the Law of the Sea on the conservation and sustainable use of marine biological diversity of areas beyond national jurisdiction)을 채택하였다. 동 협정은 국가의 배타적관할권이 미치지 않는 공해와 심해저에서의 해양생물다양성을 보전하고 지속가능하게 이용하려는 데 목적이 있다. 이 협정은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해양보호구역과 같은 보호 대상 구역을 찾아 인간의 활동을 규제하는 일정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국제적 절차 규정을 마련하고, 공해와 심해저에서 각국이 계획하는 활동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해양환경의 영향을 검토하여 그 영향을 저감할 수 있는 조치 등을 강구하는 환경영향평가 과정을 규정하고 있다. 동 협정이 적용되는 지리적 범위는 공해와 심해저로서 북극 한가운데 존재하는 공해도도 해당된다. 또한 남극조약과 남극해양생물자원보존협약의 해석에 대한 견해차에 따라 남극대륙 주변 해역에도 적용된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국가관할권 한계 바깥 지역의 해양생물다양성 협정 이행과 관련하여 극지에 대한 제도 보완, 그리고 남극 관련 조약과의 관계에 관한 문제 검토가 요구된다.

국가관할권 한계 바깥 지역의 해양생물다양성에 관한 새로운 협정 채택

1982년 유엔해양법협약(United Nations Convention on the law of the sea)이 채택되면서 바다는 국가의 관할권이 미치지 않는 영해, 배타적경제수역, 대륙붕과 국가의 관할권이 미치지 않는 공해와 심해저로 구분된다. 국가의 관할권이 미치지 않는 공해와 심해저 중, 특히 공해는 유엔해양법협약 제87조에 따라 국가들은 바다의 이용에 광범위한 자유가 허용된다. 국가들은 평화적 목적을 위하여 공해를 보존하고, 공해와 심해저에서 다른 국가의 권리를 적절히 고려하며, 공해생물자원을 보존하기 위한 허용어획량 결정과 보존조치를 수립하고, 해양환경의 보호와 보전을 위한 일반적인 의무를 진다. 유엔해양법협약은 공해와 심해저의 해양환경 보호와 보전을 위한 기본적인 법적 장치는 갖추고 있었다.

공해에서의 어업활동 등으로 해양생물다양성 감소에 대한 국제적 우려가 대두되면서 국제사회는 국가의 관할권 밖의 공해와 심해저에서 해양생물다양성 보전과 지속가능한 이용에 따른 문제 해결 방안 모색을 위한 논의를 시작하였다. 2004년 유엔총회는 59/24 결의를 채택하여 국가관할권 한계 바깥 지역의 해양생물 다양성 보전과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개방형비공식작업그룹 (Ad Hoc open-ended Informal Working Group)을 설치하였고, 2015년 제9차 개방형비공식작업반회의에서 구속력 있는 국제법 마련을 위한 합의가 이루어졌다. 2015년 유엔총회의 69/292 결의로, 유엔은 2016년부터 2017년까지 새로운 국제문서의 구성요소에

관한 논의를 4차례 개최하였고, 2017년 유엔총회의 72/294 결의로 2018년부터 2020년까지 새로운 국제문서의 문안 준비를 위한 논의를 4차례 개최하기로 하였다. 2020년 코로나-19 팬데믹으로 회의가 중단되고, 4차례 회의로 문안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1차례의 회의를 추가로 개최하면서 2023년 3월까지 총 5차례 회의가 개최되었다. 마지막 5차 회의는 두 번 회의를 휴정하고 다시 속개하는 방식을 취하였기 때문에 2023년 6월 19일 국가관할권 한계 바깥 지역의 해양생물다양성 보전과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정부간회의(이하 'BBNJ 정부간회의')에서 BBNJ 협정이 채택되기까지 실제 회의는 총 7차례가 있었다.

2006년 첫 개방형비공식작업그룹이 개최된 때로부터 계산하면, 약 17년 만에 결실을 거둔 것이다. 2023년 3월 제5차 BBNJ 정부 간회의의 속개회의 당시 국가들은 국가관할권 한계 바깥 지역의 해양유전자원을 접근하고 이용하였을 때 발생하는 이익을 공유하는 방법과 이익 공유를 일으키는 해양유전자원의 법적 정의를 포함하여 여러 주요 쟁점에서 타협을 이루지 못하고 있었다. 회의 종료일이 가까워지면서 참석자들은 이번 회의에서도 BBNJ 협정 채택이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하였다. 그러나 회의 마지막 날에 이르자 각국 대표들은 일부 사안에 대하여 기존 입장을 양보하면서 타협안을 마련하거나, 해석의 여지를 남기는 포괄적 용어를 사용하는 타협안에 합의하였으며, 협정이 발효된 당사국 총회 결정 사안으로 남겨두는 방식으로 타협하였다. 즉, BBNJ 협정이 채택되기는 하였지만 아직 미완성의 협정이라는 의미다.



[그림 1] BBNJ 협정 채택 주요 과정

BBNJ 협정은 국가관할권 한계 바깥 지역의 해양유전자원과 해양유전자원의 디지털염기서열정보에 관한 정보와 샘플 등 이익을 공유하고, 보호가 필요한 일정 구역에 해양보호구역을 설정하거나 계획된 활동의 해양환경에 대한 잠재적 영향을 평가하고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여 유엔해양법협약상 국가관할권 한계 바깥 지역의 해양생물다양성 보전과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한 이행법 체계를 갖추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또한 개발도상국이 BBNJ 협정 초안에 따른 의무를 이행할 수 있도록 그들의 역량을 강화하고 필요한 해양기술을 이전하기 위한 규정을 담고 있다.

BBNJ 협정의 주요 내용

해양유전자원과 관련하여 BBNJ 협정 제2부는 국가관할권 한계 바깥 지역의 해양유전자원과 해양유전자원에 관한 디지털염기서열정보¹⁾에 대한 접근과 이용에 따른 비금전적 또는 금전적 이익 공유에 관한 사항을 다룬다. 동 협정에 따라 제2부 규정은 원칙적으로 당사국에 이 협정의 발효 이후에 채집된 해양유전자원과 그에 관한 디지털염기서열정보와 관련한 활동에만 적용된다. 따라서 협약 발효 이전에 채집한 국가관할권 한계 바깥 지역의 해양유전자원은 채집 관련 정보를 통보하거나 이익 공유를 부담할 법적 의무가 없다는 의미이다. 그러나 발효 이전에 채집한 해양유전자원도 발효 이후에 이용의 대상이 된다면 반대로 2부의 적용을 받아 이익공유 의무를 부담한다. 그러나 후자의 경우 국가들이 BBNJ 협정에 가입할 때 적용받지 않도록 선언할 수 있다. 또한 공해와 심해저에서 해양유전자원을 채집할 경우에는 6개월 이전과 채집 이후 1년 이내, 그리고 해양유전자원과 그에 관한 디지털염기서열정보를 이용하거나 상업화하는 경우에는 당사국은 협정에서 규정하는 일정한 정보를 공유할 의무를 진다. 이러한 통보 의무는 해양유전자원과 그에 관한 디지털염기서열정보로부터 발생하는 비금전적 이익공유의 한 형태로, 이 밖에 역량강화와 해양기술이전, 과학적 자료에 대한 접근을 비금전적 이익공유로 규정한다. 국가관할권 한계 바깥 지역의 해양유전자원과 해양유전자원에 관한 디지털염기서열정보를 이용하여 얻은 금전적 이익에 대하여는

두 가지 방식의 형태를 규정하고 있다. 첫째, 선진국에 이 협정에 따라 정해진 각국 부담금의 50%를 특별기금으로 납입하도록 규정한다. 둘째, 해양유전자원과 그에 관한 디지털염기서열정보의 이용으로 발생하는 금전적 이익은 이 협정 발효 이후에 회원국들의 최고 의사결정기관인 당사국 총회의 결정에 따르도록 하고 있다. 금전적 이익을 공유하는 방법에 따라 금전적 이익을 공유하는 경우에는 해당 선진국은 앞선 부담금의 50% 특별기금을 납입하지 않아도 된다.

BBNJ 협정 제3부는 해양보호구역 등 보호가 필요한 일정 지역에서의 해양생물다양성 보전과 지속가능한 이용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특정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구역을 설정하고 이를 모니터링하는 과정을 다룬다. 당사국 총회는 기본적으로 국가관할권 한계 바깥 지역인 공해와 심해저에서 구역기반관리수단 설정과 관련 조치에 관한 결정 권한을 보유한다. BBNJ 협정은 공해와 심해저라는 지리적 범위를 적용 대상으로 하고 있어 기존에 공해와 심해저를 대상으로 하는 법문서, 체제, 세계적·지역적·영역별 기구가 있는 경우에는 법문서, 체제, 기구가 해당 지역의 해양보호구역 설정 등에 우선하는 권한을 가지는지에 대한 문제가 발생한다. 이와 관련하여 BBNJ 협정은 관련 법문서, 체제, 기구에 의하여 채택된 기존의 조치가 있을 때는 협력과 조정을 거쳐 두 조치가 서로 상충하는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양립 가능한 조치를 결정하여야 한다. 또한 BBNJ 협정 당사국 총회가 결정하려는 구역기반관리수단이 관련 법문서, 체제, 기구의 권한 범위 내에 있는 경우에는 해당 법문서, 체제, 기구와 이 협정 모두 회원국인 국가에 BBNJ 협정 당사국 총회의 결정이 해당 법문서, 체제, 기구에서 채택되도록 증진할 것을 권고하는 것만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사항은, 남극 조약의 적용 대상 지역인 남위 60도 이남 해역의 법적 성격을 공해와 심해저로 해석할 경우에는 해당 지역에서 BBNJ 협정에 의한 구역기반관리수단 설정 시 남극조약체제의 해양보호구역 설정 권한과의 관계가 문제가 된다.

BBNJ 협정 제4부는 국가관할권 한계 바깥 지역에서 계획되는 활동에 대하여 환경영향평가를 수행하고 승인한 활동을 모니터링하고 검토하는 과정을 규정한다. 기본적으로 이 협정의 조항은 국가관할권 한계 바깥 지역에서 수행되는 활동에만 적용된다. 단, 국가관할권 이내 지역에서 수행되는 활동이 한계 바깥 지역에 영향을 주는 경우에는 당사국은 국내적 과정에 따라 환경영향평가를 수행하거나 이 협정에서 규정한 과정에 따른 환경영향평가를 수행하도록 규정한다. 국내적 과정에 따를 때는 환경영향평가 수행 과정에서 생산되는 정보를 공유할 의무를 진다. 환경영향평가 개시와 관련하여 계획된 활동이 사소하거나 일시적 영향을 초과하는 경우 또는 그 영향을 알 수 없거나 알기 어려울 경우에는 당사국은 환경영향평가 수행 여부를 판단하는 스크리닝을 실시하고, 그 결과 실질적 오염이 심각하거나 해로운 변화를 일으킨다고 믿을

만한 합리적 근거가 있다면 이 협정에 따른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당사국은 활동 승인 이후에도 승인한 활동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모니터링 보고서를 작성 및 공유하고 활동 지속 여부를 검토할 의무를 진다. 이 협정의 환경영향평가 과정에서 주요 의사결정은 당사국에 의한다. 단, 스크리닝 결정 이후와 활동의 승인 이후 다른 당사국은 공유된 정보를 기초하여 우려를 제기할 수 있으며 이때 과학기술기구는 그 우려를 검토하여 필요시 해당 결정을 한 당사국에 권고할 수 있다. 다른 당사국의 우려와 과학기술기구의 권고를 받은 당사국은 그 의견을 반드시 수용할 법적 의무는 없으나 그에 대해 고려해야 한다.

BBNJ 협정 초안과 극지와의 관계

BBNJ 협정 초안은 제3조에서 이 협정의 적용 범위를 국가관할권 한계 바깥 지역으로 규정하고 공해와 심해저가 이에 해당된다. 이 공간적 범위에는 현재 열어 있는 중앙북극해공해(CAO)가 포함됨은 이론의 여지가 없다. 따라서 중앙북극해공해는 BBNJ 협정 적용 대상 지역으로 중앙북극해공해에서의 해양유전자원과 그에 관한 디지털염기서열정보 관련 활동은 BBNJ 협정의 규율 대상이 된다. 중앙북극해공해에는 해양보호구역이 설정될 수 있고, 중앙북극해공해에서의 계획된 활동은 제3조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수행 여부가 검토되어야 한다. 특히 구역기반관리수단에 관한 제21조 제4항과 환경영향평가에 관한 제32조 제6항에서는 국가의 배타적경제수역으로 완전히 둘러싸여 있는 지역에서 구역기반관리수단 설정이나 환경영향평가를 수행할 경우 그 연안국에 사전통보를 포함하는 적극적 협의 의무를 부여하고 있다. 그러한 국가의 의견에 대하여 적절한 때에 구체적으로 서면 답변할 것을 규정하고 있어 BBNJ 협정 절차상 협의 과정에서 중앙북극해공해 연안국의 입지가 강화되었다.

남극조약은 제6조에서 남극조약의 적용 범위를 빙봉을 포함한 남위 60도 이남 지역으로 규정한다. 남극은 남극대륙 영유권에 관한 제4조를 고려할 때 남극대륙 주변 해역이 BBNJ 협정의 적용 대상에 포함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현재 남극에서 영유권 관련 주장은 남극조약 제4조에 따라 어느 국가도 남극지역에 대한 주권적 권리를 갖지 못하며, 그 어떠한 규정이나 조약상의 국가 행위도 자국의 영유권 주장을 포기하거나 타국의 영유권 주장을 인정 또는 부정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않는 상태로 동결되어 있다. 남극대륙의 영유권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특정 국가의 배타적 경제수역과 대륙붕이 존재한다고 확인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남극조약 제4조에 따른 해석에 따라 당시 기존의 영토주권 주장에 따른 영해, 배타적경제수역과 대륙붕이 유효하다는 견해도 가능하며, 어떠한 영토주권도 인정되지 않음에 따른 영해, 배타적 경제수역과 대륙붕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견해도 가능하다. 따라서 남극대륙 바깥 바다와 해저는 모두 BBNJ 협정의 적용지역에 포함되므로 남극조약의 적용 범위와 중첩된다고 할 수도 있다. 이와

관련하여 BBNJ 협정 제5조는 유엔해양법협약상 국가의 권리, 관할권 그리고 의무를 침해하지 않을 것을 규정하는 동시에 관련 법문서, 체제, 기구(남극조약이 해당됨)를 저해하지(undermine) 않도록 규정한다. BBNJ 협정이 남극조약과 관련 의정서의 상위 법률로 적용되는 것이 아니므로 BBNJ 협정 당사국은 남극조약 당사국과의 협력 및 조정으로 권한 중첩 문제를 조율하여야 한다. 실제로 2018년 제41차 ATCM에서 협의 당사국들은 “BBNJ 협정이 채택되면 남극의 적용 문제에 대하여 ATCM에서 다시 검토”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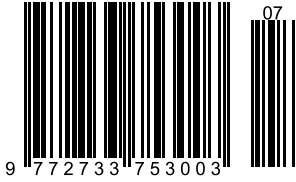
이와 관련하여 구역기반관리수단에 관한 제3부 제18조에서 구역기반관리수단의 설정은 주권, 주권적 권리 또는 관할권의 주장이나 부인의 근거로 사용되어서는 안 되며, 당사국 총회는 그러한 구역기반관리수단의 결정 제안을 고려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규정에 따르면, 남극대륙 주변 해역에서 구역기반관리수단을 설정하는 제안은 남극대륙에 대한 주권, 주권적 권리 또는 관할권 주장과 연계되어 BBNJ 협정에 따른 구역기반관리수단 설정이 어려울 수 있다. 이미 남극해양생물보존협약도 독자적으로 해양보호구역을 설정할 권한을 가지고 있으므로, 이 경우 BBNJ 협정 제22조 제1항(c)에 해당하여 양 당사국에 권고하는 결정만 가능할 수도 있다.

해양유전자원의 접근과 이익공유에 관한 BBNJ 협정 규정은 남극대륙 주변 해역의 법적 성격에 대한 결론에 따라 직접 적용이 될 수도 있다. 그러나 직접 적용이 되지 않을 경우라도 국가관할권 한계 바깥 지역의 해양유전자원 접근과 이익공유에 관한 BBNJ 협정상 법체제는 남극조약 대상 지역의 해양유전자원에 대한 새로운 법체제를 형성하는 논의에 상당한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유사한 예로 2022년 12월 생물다양성협약 당사국 총회는 유전자원의 디지털염기서열정보 이익공유와 관련하여 법적 개념에 이견이 있음을 인정하였음에도 유전자원의 디지털염기서열정보의 이용 공유의 의무를 확인하였고, 디지털염기서열정보의 이용으로 발생하는 이익의 공유 방법을 고안하기로 합의하였다. BBNJ 정부간회의에서도 해양유전자원의 디지털염기서열정보 이익공유에 관해 상당한 견해차가 있어 합의가 쉽지 않은 상황이었다. 그러나 유전자원의 디지털염기서열정보 이익 공유에 관한 생물다양성협약 당사국 총회의 합의는 BBNJ 정부간회의 타협 과정에도 영향을 주어 BBNJ 협정에 디지털염기서열정보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었다.

BBNJ 협정 채택을 계기로 남극에서도 유전자원의 생물 탐사와 이익공유 관련 논의가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BBNJ 협정의 적용 지역은 국가관할권이 미치지 않는 공해와 심해저를 대상으로 한다. 남극조약의 적용 지역은 영유권 주장이 동결된 남극대륙과 그 주변 해역을 대상으로 한다는 점에서 그 범위가 비교될 수 있다. 유엔 해양법협약상 공해와 심해저는 기존에는 우리나라가 해양유전자원을

온전히 이용할 법적 권리를 가질 수 있었기 때문에 이를 제약하는 새로운 법적 질서 형성에 대응이 필요하였다. 그러나 남극조약의 상황은 조금 복잡하다. 남극대륙의 영유권 분쟁은 1959년 남극조약 채택 당시 상태로 동결되어 있다. 당시 남극대륙의 영유권 주장이 남극조약으로 무효화되거나 포기되지 않았으므로 남극대륙에 대한 영유권 분쟁은 아직도 진행 중이다. 만일 남극조약 체제가 무너지고 남극대륙에 대한 영유권 주장이 분쟁의 대상이 된다면, 1959년 남극조약 채택 당시로 돌아가서 영유권 문제를 다룰 것이다. 또한 남극조약에 대한 영유권 주장을 하지 않았던 우리나라의 상주기지 설치·운영, 특별보호구역의 운영·관리, 과학연구활동 등 남극의 보호와 연구에 대한 기여가 무색해질 수도 있다. 따라서 타국이 주권적 권리를 가지는 남극대륙에 그 국가의 국내 절차에 따라 유전자원에 접근하고 이용하는 이용국이 되는 것보다는, 남극조약에서의 유전자원 접근과 이익공유 제도 형성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남극조약 체제 내에서 남극의 유전자원에 대한 접근의 자유와 절차적 투명성을 확보하는 것이 더 필요해 보인다. 현재 남극조약 체제가 유효한 이상 우리나라는 중진의 남극연구 활동 국가로서 남극 거버넌스에서의 리더십을 가질 수 있도록 남극에서의 유전자원의 접근과 이익공유체제 도입에 대한 정부 차원의 기본 방향을 설정하는 등 대응 방안의 수립이 절실하다.

1) 디지털염기서열정보(Digital Sequence Information)의 개념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으며, 국가들 간 견해차도 상당하다. 이에 관한 국제사회 논의는 아직 진행 중이다. DNA와 RNA 염기서열에 관한 단순 정보에서부터 단백질 구성 정보 또는 유전 정보를 담고 있지 않은 파생물까지 포함할 수 있는 개념으로 어느 정보까지를 의미하는지에 대하여는 BBNJ 협정 발효 이후 당사국 총회에서 별도 논의를 거쳐 합의해야 할 사안이다.



ISSN 2733-7529 (Print)
ISSN 2733-7537 (Online)



발행일: 2023년 9월
발행처: 극지연구소 정책개발실 Tel. 032-770-8425
주소: 인천광역시 연수구 송도미래로 26, 극지연구소 (www.kopri.re.kr)

Copyright© 2014 KOPRI, All rights reserved.
Cover pages photo credit© KOPRI